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2.	
연역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스 포 츠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함(안 제3조)
- 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 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한다)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④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를 "국무총리인 위원장이"로, "부위원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를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를 "국무총리인 위원장과"로, "부 위원장이"를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로, "제3조"를 "제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정책위원회의"를 각각 "국무총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 ③ 민간위원은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형

개 정 안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 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 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 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 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 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저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 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 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 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 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 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신 설>

-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제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u>정</u> <u>책위원회의 업무</u>를 총괄한다.
 -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 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위원이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u>정책위</u> 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
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한다.
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순영) ①
<u>국</u>
무총리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의 업무
②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 -
<u>국무총리인</u>
위원장과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 -
<u>제3조제3항</u>
③ <u>국무총</u>
리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u>정책위원</u> 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통보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⑦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u>정책위원회의</u>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

 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
 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

국무총리
인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무총리인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국무총리인</u>
⑧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u>다.</u>
세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 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 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 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으로 구성한다.

- ②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한다.
- ③ 민간위원은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다.
-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underline{5}$ \sim $\underline{7}$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